

# 환경부 고시 제2016-254호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요약본

※ 사용자를 위하여 정리 요약한 사항으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고시 원본(환경부고시 제2016-254호)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7.01

##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시행 2016.12.30] [환경부고시 제2016-254호, 2016.12.30, 일부개정]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 044-201-6829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 및 제34조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의 지정 및 그 품목별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 생활화학제품"이란 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라 일반 소비자들이 주로 생활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을 말한다.
2. "살생물제품"이란 법 제2조제16호나목에 따라 사람과 동물을 제외한 모든 유해한 생물을 죽이거나 생물의 활동을 방해·저해하는데 사용하는 제품을 말한다.
3. "유효성분"이란 제품 내 함유량과 관계없이 제품의 기능을 발휘하는 성분을 말한다.
4. "살생물 성분"이란 위해우려제품에 함유되어 내재된 작용에 의해 사람과 동물을 제외한 모든 유해한 생물을 죽이거나 생물의 활동을 방해·저해하여 살균·항균·소독·방부 등의 기능을 발휘하거나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는 성분을 말한다.
5. "시험분석기관"이란 법 제34조에 따른 안전기준의 확인을 위한 시험분석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목과 같다.
  - 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나.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 다.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
6. "자가검사"란 위해우려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자가 그 제품이 법 제34조에 따른 안전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제3호에 따른 시험분석기관의 시험분석을 거쳐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동일모델"이란 자가검사를 완료하여 자가검사번호를 부여받은 제품과 용도 및 제형, 성분, 중량(용량), 포장 등이 모두 동일한 제품을 말한다.
8. "품목"이란 소비자가 위해우려제품의 종류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생산·수입업체에서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으로 기재하는 표준화된 명칭을 말한다.
9. "모델명"이란 생산·수입업체에서 제품을 식별하기 위해 부여하는 고유한 명칭을 말한다.
10. "어린이보호포장"이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아니하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용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1. "1차 포장"이란 제품의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를 말한다.
12. "2차 포장"이란 1차 포장을 수용하는 1차 포장 이외의 포장과 보호재 및 표시의 목적으로 한 포장(첨부문서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2장 위해우려제품의 지정

제3조(위해우려제품)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위해우려제품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유통조사) 환경부장관은 위해우려제품의 후보군을 선정하기 위하여 일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유통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3장 안전·표시기준

제5조(안전기준의 설정 등) ① 위해우려제품 내 함유된 유해물질에 관한 기준은 법 제33조에 따른 제품 위해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질 등에 대하여 국내·외의 연구·검사기관에서 이미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였거나 위해요소에 대한 과학적 시험·분석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근거로 유해물질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유해물질 기준은 품목별로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을 지정하거나 제형, 용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 함유량을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 내 산(pH)조절제로 사용되어 중화되는 등 사용 과정에서 국민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위해우려제품의 품목별 안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위해우려제품의 물질별 안전기준에 대한 시험방법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부득이하게 별표 3에 수록되지 않은 시험법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환경부의 사전검토를 거친 후 활용할 수 있다.

⑤ 위해우려제품에 품목별 안전기준에 따른 함유 기준치의 최대값을 초과하는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되어서는 아니 된다.

⑥ 위해우려제품에 품목별 안전기준에 따른 사용제한 물질이 함유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해우려제품을 생산하면서 사용제한 물질을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으나, 생산 또는 보관 과정 중 포장재로부터 이행되는 등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고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⑦ 법 제27조에 따른 제한물질, 금지물질의 경우에는 이 고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안전기준의 확인) ① 위해우려제품을 생산·수입하려는 자는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시험분석기관에 의뢰하여 별표 2에 따른 제품의 모델의 구분별로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분석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 등 관련 자료를 3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인위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불순물·부산물로 생성될 가능성이 없는 등 시험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없는 객관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해우려제품을 생산·수입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자가검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시험분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위해우려제품을 수입하려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 공동으로 시험분석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험분석기관은 해당제품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험분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자가검사를 신청받은 제품에 대해 별지 제2호 서식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시험분석 결과 안전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자가검사번호의 부여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 시험분석기관은 자가검사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제품이 불합격 항목을 개선해 자가검사를 재신청한 경우, 모든 자가검사 항목에 대하여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물질별 안전기준은 충족하였으나 별표 5에 따른 용기·포장 및 중량에 관한 기준만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의 경우 재시험 시 물질별 안전기

준에 대한 시험분석은 생략할 수 있다.

⑤ 이 고시 시행 이전에「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품 내 함유된 화학물질에 대한 시험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물질에 대해서는 이 고시에 따른 최초의 시험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시험분석기관에서 발급받은 성적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동일모델의 확인)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안전기준 확인을 완료한 위해우려제품과 동일한 제품 또는 동일한 모델로 분류되는 제품을 수입하거나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 통관 또는 제품 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동일모델의 확인을 시험분석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분석기관에 동일모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동일모델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일모델 확인 신청을 받은 시험분석기관은 이를 확인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위해우려제품 자유판매 증명서의 발급) ① 위해우려제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려는 생산업자 또는 수출업자가 해당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위해우려제품 자유판매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위해우려제품 자유판매 증명신청서를 시험분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위해우려제품 자유판매 증명신청서가 적합한 경우 시험분석기관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위해우려제품 자유판매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위해우려제품 사전통관 확인증의 발급) ① 위해우려제품을 수입하려는 자가 수입하려는 위해우려제품에 대해 제6조에 따른 안전기준의 확인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을 위한 시험검사 등을 위하여 사전통관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위해우려제품 사전통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험분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위해우려제품 사전통관 신청서가 적합한 경우 시험분석기관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사전통관 대상 위해우려제품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현황 등의 제출) ① 시험분석기관은 위해우려제품의 자가검사 신청, 검사성적서 발급, 변경신고, 동일모델 확인 등에 대한 실적 현황을 분기별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를 취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험분석기관은 자가검사 제품의 성분 목록 등 함유물질에 관한 정보를 분기별로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용기·포장 및 중량 등에 관한 기준) ① 위해우려제품의 용기·포장 및 중량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용기·포장 및 중량 등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

③ 위해우려제품 중 소비자가 마시거나 흡입하는 경우에 중독 등의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을 생산·수입하려는 자는 별표 6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생산업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것

2.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것

④ 제3항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의 구체적인 기준은「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4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  
산품 안전기준을 준용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을 한 경우에는 별표 7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표시기준) ① 위해우려제품의 표시사항 및 방법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품목별 안전·표시기준에서 별도의 표시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해우려제품을 생산하면서 표시사항 물질을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으나, 생산 또는 보관 과정 중 포장재  
로부터 이행되는 등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고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해우려제품을 생산·수입하려는 자는 이 고시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한 후 별표 7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위해우려제품을 생산·수입하려는 자가 표시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위해우려제품 표시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변경신고 등) ①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안전기준 확인을 완료한 위해우려제품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성적서 등에 포함되는 제품정보 및 생산·수입자  
의 정보 등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종전의 제품을 계속하여 생산·수입하려는 자는 정보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내 종전의 제품에 대한 성적서를 발  
급한 시험분석기관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제품정보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자가검사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2. 제품의 품목, 별표 2에 따른 모델의 구분이 변경되는 경우

3. 생산업체가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양도·양수로 인해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등 기존 사업자의 권리·책임이 유지·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제외  
한다)

③ 시험분석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그 사실을 검토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1조 제3항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을 완료한 위해우려제품의 어린이보호포장 정보가 변경된 경우, 정보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내 종전의 제  
품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한 시험분석기관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험분석기관은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그 사실을 검토한 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기준의 해석) ① 이 고시에 의한 안전·표시기준의 해석은 환경부장관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표시기준의 해석이 필요한 자는 서면으로 환경부장관에게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안전·표시기준의 해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칙 <제2016-254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관리 품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사항에 해당되는 제품의 경우 제5조는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며, 제11조제1항에 따른 용기기 준 중 강도시험 관련 사항 및 제12조는 고시 후 1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인쇄용 잉크·토너의 경우 제5조는 고시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환경표지대상 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 고시)에 의해 잉크·토너 카트리지가 장착된 프린터·복사기가 환경표지인증을 득한 경우 방출량시험시 장착되었던 해당 잉크·토너 카트리지의 경우에는 제5조는 해당인증 유효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규설정 안전·표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의 개정사항에 해당되는 제품의 경우 제5조는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며, 제12조는 고시 후 1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동일모델 확인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 시행 전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동일모델 확인을 완료한 위해우려제품은 그 당시에 이 고시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른 동일모델 확인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제5조(재검토 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위해우려제품 품목별 적용 범위 및 모델구분

구분	적용범위	품목별 모델 구분		
		공통		개별품목 적용사항
		용도	제형	
세정제	일반 가정, 사무실 등에서 물체를 세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세정제로 볼 수 있는 제품 중 의약외품(콘택트렌즈 세정용 등), 인체 세정용(모발샴푸, 바디샴푸 등) 화장품, 주방용 세척제,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겨갈 수 있는 물질, 자동차용 유리세정제, 가습기 내의 가습용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품 등 타법으로 관리되는 품목은 제외	오븐용, 렌지후드용, 욕실용, 변기용, 카페트용, 세탁조용, 하수구용, 배수관용, 건물 바닥용, 구두용, 가구용, 자동차용, 가습기용, 에어컨용, 악기용, 곰팡이제거용, 이끼제거용, 얼룩제거용, 스티커제거용, 실리콘제거용, 섬유용, 가죽용, 유리용, 금속용, 기타 <sup>(1)</sup>	고체형(타블릿형, 파스텔형, 스틱형 포함), 티슈형, 분말형, 에멀션형(페이스트형, 왁스형, 로션형, 젤형 포함), 액체형, 스프레이형(분무형 에어로졸형 포함), 리필형 <sup>(2)</sup> 등	-
합성세제	일반 가정, 사무실 등에서 의류, 섬유, 신발 등을 세탁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합성세제로 볼 수 있는 제품 중 합성 계면활성제가 포함되지 않은 제품은 포함되지 않음.	의류·섬유·신발용, 홈드라이클리닝용, 기타 <sup>(1)</sup> 등	고체형(타블릿형, 파스텔형, 스틱형 포함), 티슈형, 분말형, 액체형, 스프레이형(분무형, 에어로졸형 포함), 캡슐형, 리필형 <sup>(2)</sup> 등	알칼리성(pH 11.0 초과), 약알칼리성(pH 8.0 초과 11.0 이하), 중성(pH 6.0 이상 8.0 이하), 약산성(pH 6.0 미만 3.0 이상), 산성(pH 3.0 미만)
표백제	일반 가정, 사무실 등에서 의류 등에 묻은 때를 없애고 변색된 상태를 희게 할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의류·섬유·신발용, 얼룩제거용, 기타 <sup>(1)</sup> 등	분말형, 액체형, 스프레이형(분무형, 에어로졸형 포함), 리필형 <sup>(2)</sup> 등	과탄산나트륨계, 과붕산나트륨계, 과산화수소계, 염소계, 기타 등
섬유유연제	일반 가정, 사무실 등에서 의류 등을 세탁 또는 건조할 때 섬유를 부드럽게 하거나, 정전기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의류·섬유·신발용, 기타 <sup>(1)</sup> 등	티슈형, 액체형, 스프레이형(분무형, 에어로졸형 포함), 리필형 <sup>(2)</sup> 등	표준형, 농축형
코팅제	일반 가정, 사무실 등에서 물체의 표면에 광택, 표면보호, 방수, 발수 등의 효과를 내는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광택용, 표면보호 코팅용, 발수방수용, 정전기방지용(섬유유연제 기능 제품 제외), 미끄럼방지용, 기타 <sup>(1)</sup> 등 세부용도에 따라 자동차용, 바닥용, 가구용, 의류, 구두용, 악기용, 기타 <sup>(1)</sup> 등 재질에 따라 섬유·가죽용, 금속용, 석재용, 목재용, 비닐용, 고무용, 유리용, 기타 <sup>(1)</sup> 등	고체형(타블릿형, 파스텔형, 스틱형 포함), 티슈형, 에멀션형(페이스트형, 왁스형, 로션형, 젤형 포함), 액체형, 스프레이형(분무형, 에어로졸형 포함), 함침물형, 리필형 <sup>(2)</sup> 등	-

<p><b>방청제</b></p>	<p>일반 가정, 사무실 등에서 금속표면에 피막을 형성하는 등 금속이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방청윤활제 포함). 방청제로 볼 수 있는 제품 중 방청 기능이 없는 윤활제, 배관 및 보일러용 방청제, 연마제 및 방청 페인트류 등은 포함되지 않음.</p>	<p>차량용, 악기용, 기타<sup>(1)</sup> 등</p>	<p>스프레이형(분무형, 에어로졸형 포함), 액체형, 에멀션형, 리필형<sup>(2)</sup> 등</p>	<p>-</p>
<p><b>김서림방지제</b></p>	<p>일반 가정, 사무실 등에서 욕실거울 및 자동차 유리 등에 김서림을 방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p>	<p>차량용, 유리·거울용, 렌즈용, 기타<sup>(1)</sup> 등</p>	<p>티슈형, 스프레이형(분무형, 에어로졸형 포함), 리필형<sup>(2)</sup> 등</p>	<p>-</p>
<p><b>접착제</b></p>	<p>일반 가정, 사무실 등에서 물체의 표면을 접착시키는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사람의 신체부위에 머리카락 및 털 대용을 부착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가발용·체모용 접착제와 가속눈썹을 사람 눈의 속눈썹자리에 부착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가속눈썹 접착제 및 쌍꺼풀을 만들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접착제 등을 포함. 접착제로 볼 수 있는 제품 중 시멘트류, 실리케이트 염류 등의 무기재료 및 땀납, 은납 등 금속재료를 주원료로 사용한 접착제 및 테이프 형태의 제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문구용 풀, 벽지 도배용 등 타법으로 관리되는 품목은 포함되지 않음.</p>	<p>물체 접착용(고무용, 목재용, 플라스틱용, 피혁용, 섬유용, 금속용, 도자기용, 유리용 등 포함), 강력·순간접착용, 가발용, 속눈썹용, 쌍꺼풀용, 인조손톱용(네일용), 기타<sup>(1)</sup> 등</p>	<p>고체형(타블릿형, 파스텔형, 스틱형 포함), 에멀션형(페이스트형, 왁스형, 로션형, 젤형 포함), 액체형, 스프레이형(분무형, 에어로졸형 포함), 핫멜트형, 리필형<sup>(2)</sup> 등</p>	<p>가발용 접착제 및 쌍꺼풀용 접착제 : 주요 성분별 가속눈썹용 접착제 : 주요 성분별, 색상별로 구분</p>
<p><b>다림질보조제</b></p>	<p>일반 가정, 사무실 등에서 다림질 풀 등 의류 및 섬유의 구김 및 주름제거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p>	<p>섬유용, 식물용, 기타<sup>(1)</sup> 등</p>	<p>액체형, 스프레이형(분무형, 에어로졸형 포함), 에멀션형(페이스트형, 왁스형, 로션형, 젤형 포함), 리필형<sup>(2)</sup> 등</p>	<p>-</p>
<p><b>방향제</b></p>	<p>일반 가정, 사무실, 차량 등 일정한 공간 내에서 또는 의류·섬유·신발 등에 지속적으로 좋은 냄새를 발산시켜 사용자의 기분을 상쾌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및 향초. 제품의 주 기능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에 향을 첨가하여 부가적으로 방향 기능을 가진 제품은 검사대상에 포함. 다만, 제레용 향 및 말린 꽃잎 등 인위적으로 향을 첨가하지 않은 제품, 향기 치료제 등 의약품, 향수, 분말향, 향낭, 코롱, 체취방지용 등 화장품과 같이 타법으로 관리되는 품목은 포함되지 않음.</p>	<p>실내공기용, 차량용, 의류·섬유·신발용(탈취제, 섬유유연제, 합성세제 기능 제품 제외), 기타<sup>(1)</sup> 등</p>	<p>고체형(타블릿형, 파스텔형, 스틱형 포함), 에멀션형(페이스트형, 젤형 포함), 액체형, 스프레이형(분무형, 에어로졸형, 자동분사형 포함), 함침물형, 향초형, 훈증형, 리필형<sup>(2)</sup> 등</p>	<p><b>주요 성분별</b></p>



<p><b>탈취제</b></p>	<p>일반 가정, 사무실, 차량 등 일정한 공간 내에 또는 섬유 제품과 같은 특정 제품의 악취를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및 미생물을 이용한 미생물 탈취제. 탈취제로 볼 수 있는 제품 중 동물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 등 타 법으로 관리되는 품목은 제외.</p>	<p>실내공기용, 의류·섬유·신발용, 차량용, 냉장고용, 화장실용, 애완동물용, 기타<sup>(1)</sup> 등</p>	<p>제형(타블릿형, 파스텔형, 스틱형 포함), 분말형, 에멀션형(페이스트형, 왁스형, 로션형, 젤형 포함), 액체형, 스프레이형(분무형, 에어로졸형 포함), 훈증형, 리필형<sup>(2)</sup> 등</p>	<p>- 탈취제, 미생물탈취제 - 말폐공간, 개방공간</p>
<p><b>물체 탈·염색제</b></p>	<p>일반 가정, 사무실 등에서 염색된 색상을 흡착하거나 분해하여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및 물체에 색을 입히는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p>	<p>의류·섬유·신발용, 가죽용, 자동차도색용, 기타<sup>(1)</sup> 등</p>	<p>고체형(타블릿형, 파스텔형, 스틱형 포함), 분말형, 펜형, 액체형, 스프레이형(분무형, 에어로졸형 포함), 리필형<sup>(2)</sup> 등</p>	<p>주요 성분별</p>
<p><b>문신용 염료</b></p>	<p>신체부위(피부)에 시술하는 염료로서 피부 속까지 침투하여 반영구·영구적인 기능을 가지는 화학제품. 모발 염색제제, 헤어 틴트, 헤어 칼라스프레이, 그 밖의 염모용 제품류 등 타법으로 관리되는 품목은 포함되지 않음.</p>	<p>눈썹·아이라인용, 입술용, 전신용, 기타<sup>(1)</sup> 등</p>	<p>액체형, 에멀션형(페이스트형, 왁스형, 로션형, 젤형 포함), 파우더형, 리필형<sup>(2)</sup> 등</p>	<p>색상별</p>
<p><b>인쇄용 잉크토너</b></p>	<p>일반 가정, 사무실 등에서 사용하는 잉크젯 프린터에 사용되는 액체 형태의 소모품과 레이저 프린터 또는 복사기에 사용되는 분말 형태의 소모품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p>	<p>인쇄용 잉크, 인쇄용 토너, 기타<sup>(1)</sup> 등</p>	<p>액체형, 에멀션형(왁스형, 페이스트형 포함), 분말형 등</p>	<p>-</p>
<p><b>소독제</b></p>	<p>일반가정, 사무실, 차량실내, 기타 시설 등에서 살균, 항균, 소독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소독제로 볼 수 있는 제품 중 손 세정제, 의약외품(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과산화수소, 이소프로필 알코올, 염화벤잘코늄, 크레졸 또는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외용소독제,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인체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 살균·소독제 등),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겨갈 수 있는 물질 등 타법으로 관리되는 소독제는 포함되지 않음.</p>	<p>배수구용, 에어컨용, 항균용, 염소계소독제, 기타<sup>(1)</sup> 등</p>	<p>고체형(타블릿형, 파스텔형, 스틱형 포함), 분말형, 액체형, 함침물형, 스프레이형(분무형, 에어로졸형 포함), 훈증형, 리필형<sup>(2)</sup> 등</p>	<p>-</p>

<p><b>방충제</b></p>	<p>일반가정, 사무실 등에서 쌀이나 의류 등에 해로운 벌레(쌀벌레, 좀벌레 등)가 침범하여 해를 끼치지 못하게 막는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방충제로 볼 수 있는 제품 중 사람 또는 동물의 보건을 위해 사용되는 파리, 모기 등의 구제제, 방지제, 기피제 및 유인살충제, 병원균을 매개하여 인간에게 질병을 전염시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수 있는 곤충이나 동물의 구제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제제인 살충제, 살서제 등 의약외품, 농작물을 해치는 균, 곤충, 응애, 선충, 바이러스, 잡초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기피제, 유인제, 전착제 등 약제 등 타법으로 관리되는 방충제는 포함되지 아니함</p>	<p>식품용, 의류용, 화장실용, 기타<sup>(1)</sup> 등</p>	<p>고체형(타블릿형, 파스텔형, 스틱형 포함), 액체형, 스프레이형(분무형, 에어로졸형 포함), 함침물형, 리필형<sup>(2)</sup> 등</p>	<p>-</p>
<p><b>방부제</b></p>	<p>일반가정, 사무실 등에서 목재 등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방부제로 볼 수 있는 제품 중 식품을 생산·가공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에 넣거나 섞는 식품첨가물, 화장품을 생산·가공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화장품에 넣거나 섞는 물질 등 타법으로 관리되는 방부제와 건축용으로 사용되는 페인트로 분류되어지는 제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p>	<p>목재용, 기타<sup>(1)</sup> 등</p>	<p>액체형, 스프레이형(분무형, 에어로졸형 포함), 리필형<sup>(2)</sup> 등</p>	<p>-</p>
<p><b>살조제</b></p>	<p>일반 가정, 사무실, 아파트단지, 야외 인공폭포 등의 실내·외 물놀이시설 및 어항 등 수중에 존재하는 조류의 생육을 억제하여 사멸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화학제품</p>	<p>어항용, 분수대용, 연못용, 수영장용, 기타<sup>(1)</sup> 등</p>	<p>액체형, 스프레이형(분무형, 에어로졸형 포함), 고체형(타블릿형 포함), 분말형(과립형, 가루형 포함), 리필형<sup>(2)</sup> 등</p>	<p>-</p>

※ 환경부고시 제2016-254호 제6조1항

제6조(안전기준의 확인) ① 위해우려제품을 생산·수입하려는 자는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시험분석기관에 의뢰하여 **별표 2에 따른 제품의 모델의 구분별로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분석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 등 관련 자료를 3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인위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불순물·부산물로 생성될 가능성이 없는 등 시험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없는 객관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위해우려제품 기준요약[안전기준, 제한물질, 표시물질]

### I. 세제류

#### 세정제

안전기준		사용제한물질	표시물질
물질명	기준(mg/kg)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000 이하	PHMG <sup>4)</sup>	DEHP
트리클로로에틸렌	1,000 이하	PGH <sup>4)</sup>	이소프로필벤젠
폼알데하이드	40 이하	PHMB <sup>4)</sup>	2-부톡시에탄올
벤젠	30 이하	염화비닐	톨루엔
비소	1 이하	디클로메탄 및 이를 0.1% 함유한 혼합물질	IPBC
염산 <sup>1)</sup>	HCL로서 10 이하	납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황산 <sup>1)</sup>	H <sub>2</sub> SO <sub>4</sub> 로서 10 이하	브롬화 에틸	
수산화나트륨 <sup>2)</sup>	NaOH로서 5 이하	MIT <sup>4)</sup>	
수산화칼륨 <sup>2)</sup>	KOH로서 5 이하	CMIT <sup>4)</sup>	
아세트알데하이드 <sup>3)</sup>	70 이하		
나프탈렌 <sup>3)</sup>	30 이하		
니켈 <sup>3)</sup>	1 이하		
<b>시험검사 대상 물질</b>		<b>구성원료 금지</b>	

- 1) 염산 또는 황산을 함유하는 세정제에 대하여 적용  
 2)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을 함유하는 세정제에 대하여 적용  
 3) 스티커제거용인 경우 추가로 시험진행  
 4) 스프레이형에 한한다

#### 합성세제

안전기준		사용제한물질	표시물질
물질명	기준(mg/kg)		
벤젠	60 이하	PHMG <sup>1)</sup>	톨루엔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00 이하	PGH <sup>1)</sup>	수소화된 경질 파라핀 정제유(석유)
비소	30 이하	PHMB <sup>1)</sup>	2-부톡시에탄올
생분해도(%)	60 이상 (KS I ISO 9439) 70 이상 (KS I ISO 7827) 90 이상 (KS M 2714)	염화비닐	-
전인산염	1.0 미만	브롬화 에틸	
pH		MIT <sup>1)</sup>	
-		CMIT <sup>1)</sup>	
<b>시험검사 대상 물질</b>		<b>구성원료 금지</b>	

- 1) 스프레이형에 한한다

# I. 세제류(계속)

## 표백제

안전기준		사용제한물질	표시물질
물질명	기준(mg/kg)		
수산화나트륨(%) <sup>1)</sup>	NaOH로서 5 이하	PHMG <sup>2)</sup>	톨루엔
전인산염(%)	1 이하	PGH <sup>2)</sup>	수소화된 경질 파라핀 정제유(석유)
벤젠	80 이하	PHMB <sup>2)</sup>	2-부톡시에탄올
비소	50 이하	염화비닐	-
-	-	브롬화 에틸	
		MIT <sup>2)</sup>	
		CMIT <sup>2)</sup>	
시험검사 대상 물질		구성원료 금지	제품표시

1) 수산화나트륨을 함유하는 표백제에 대하여 적용

2) 스프레이형에 한한다

## 섬유유연제

안전기준		사용제한물질	표시물질
물질명	기준(mg/kg)		
폼알데하이드	75 이하	PHMG <sup>1)</sup>	톨루엔
글루타알데하이드	1,000 이하	PGH <sup>1)</sup>	수소화된 경질 파라핀정제유(석유)
파라벤류	단일물질 4,000이하, 혼합물 8,000 이하	PHMB <sup>1)</sup>	2-부톡시에탄올
페녹시에탄올	10,000 이하	알킬페놀에톡실레이트 (APEOs;alkylphenol ethoxylates)계 및 알킬페놀(alkylphenol)계	1,4-다이옥세인
트리클로산	1,000 이하	디알킬(C12~18)디메틸 염화암모늄계	-
메틸이소치아졸리논	100 이하	형광증백제	
5-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	15 이하	염화비닐	
벤즈이소치아졸리논	500 이하	브롬화 에틸	
염화벤잘코늄	500 이하	2,2'-이미노다이 에탄올	
벤조산	5,000 이하	MIT <sup>1)</sup>	
벤질알콜	10,000 이하	CMIT <sup>1)</sup>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00 이하	-	
벤젠	60 이하		
납	20 이하		
카드뮴	20 이하		
수은	1 이하		
비소	1 이하		
리모넨	10,000 이하		
시험검사 대상 물질		구성원료 금지	제품표시

1) 스프레이형에 한한다

## II. 코팅 · 접착제류

### 코팅제

물질명	안전기준				사용제한 물질	표시물질	
	일반(mg/kg)		스프레이형(mg/kg)				
	광택용	표면보호 등	광택용	표면보호 등			
폼알데하이드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PHMG <sup>2)</sup>	-	
아세트알데하이드	100 이하	700 이하	60 이하	60 이하	PGH <sup>2)</sup>		
트리클로로에틸렌	200 이하	1,000 이하	200 이하	1,000 이하	PHMB <sup>2)</sup>		
나프탈렌	100 이하	200 이하	20 이하	20 이하	TPT		
디메틸폼아마드	90 이하	90 이하	90 이하	90 이하	TBT		
벤젠	90 이하	180 이하	90 이하	90 이하	유기수은 화합물		
니켈	10 이하 <sup>1)</sup>	10 이하	1 이하 <sup>1)</sup>	1 이하	염화비닐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	400 이하	400 이하	MIT <sup>2)</sup>		
-	-	-	-	-	CMIT <sup>2)</sup>		
시험검사 대상 물질					구성원료 금지		제품표시

1) 광택용 외 다른 용도를 포함할 경우 적용

2) 스프레이형에 한한다

### 방청제

물질명	안전기준		사용제한물질	표시물질
	기준(mg/kg)			
폼알데하이드	60 이하		PHMG <sup>1)</sup>	-
아세트알데하이드	50 이하		PGH <sup>1)</sup>	
나프탈렌	20 이하		PHMB <sup>1)</sup>	
에틸렌 디클로라이드	40 이하		염화비닐	
벤젠	80 이하		PCE	
DEHP	200 이하		디클로로메탄	
-	-		니켈	
-	-		MIT <sup>1)</sup>	
-	-		CMIT <sup>1)</sup>	
시험검사 대상 물질			구성원료 금지	

1) 스프레이형에 한한다

## II. 코팅 · 접착제류(계속)

### 김서림방지제

안전기준		사용제한물질	표시물질
물질명	기준(mg/kg)		
폼알데하이드	40 이하	PHMG <sup>1)</sup>	에틸벤젠
아세트알데하이드	5 이하	PGH <sup>1)</sup>	p-자일렌
나프탈렌	1 이하	PHMB <sup>1)</sup>	-
DEHP	1 이하	염화비닐	
벤젠	5 이하	MIT <sup>1)</sup>	
테트라클로로에틸렌	5 이하	CMIT <sup>1)</sup>	
시험검사 대상 물질		구성원료 금지	

1) 스프레이형에 한한다

### 접착제

물질명	물체 접착용 기준치		개발용 기준치 (mg/kg)	수신용 생가용 기준치 (mg/kg)	내일용 기준치 (mg/kg)
	일반형 (mg/kg)	스프레이형 (mg/kg)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500 이하	500 이하	300 이하	300 이하	-
트리클로로에틸렌	10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
폼알데하이드	100 이하 <sup>1)</sup>	50 이하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sup>1)</sup>
아세트알데하이드	1,000 이하	350 이하	-	-	-
클로로포름	1,000 이하	40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1,000 이하
톨루엔	5,000 이하	1,000 이하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벤젠	1,000 이하	30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1,000 이하
디메틸폼아마이드	1,000 이하	300 이하	-	-	-
디클로로메탄	800 이하	200 이하	20 이하	20 이하	800 이하
2-부톡시에탄올 (부틸 셀로솔브)	10,000 이하	5,000 이하	1,000 이하	1,000 이하	10,000 이하
납	-	-	-	1 이하	-
비소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1 이하	20 이하

1) 시아노아크릴레이트 계열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순간접착제에 대해서는 1% 미만을 적용

사용제한물질	표시물질
PHMG <sup>1)</sup>	산화 프로필렌
PGH <sup>1)</sup>	아세트산 비닐
PHMB <sup>1)</sup>	나프탈렌
TPT	이산화 티타늄
TBT	사이클로헥세인
유기수산화합물	트리부틸주석산화물
염화비닐	황화 아연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
아크릴로니트릴	
MIT <sup>1)</sup>	
CMIT <sup>1)</sup>	

1) 스프레이형에 한한다

## II. 코팅 · 접착제류(계속)

### 다림질 보조제

안전기준		사용제한물질	표시물질
물질명	기준(mg/kg)		
IPBC	10 이하	PHMG <sup>1)</sup>	아세톤
아이소프로판올	30 이하	PGH <sup>1)</sup>	-
-	-	PHMB <sup>1)</sup>	
		MIT <sup>1)</sup>	
		CMIT <sup>1)</sup>	
		아세트 알데하이드	
		폼알데하이드	
		글루타르 알데하이드	
시험검사 대상 물질		구성원료 금지	제품표시

<sup>1)</sup> 스프레이형에 한한다

### III. 방향제류

#### 방향제

안전기준				사용제한 물질	표시물질
물질명	일반 (mg/kg)	스프레이형 (mg/kg)	향초형 (mg/kg)		
폼알데하이드	25 이하	12 이하	12 이하	PHMG <sup>1)</sup>	이산화티타 늄
메탄올	2,000 이하	2,000 이하	2,000 이하	PGH <sup>1)</sup>	IPBC
벤젠	600 이하	30 이하	30 이하	PHMB <sup>1)</sup>	염화수소 <sup>1)</sup>
글리옥살	70 이하	3 이하	3 이하	염화비닐	-
트리클로로에틸렌	4 이하	0.1 이하	0.1 이하	붕소산 사나트륨염	
				MIT	
				CMIT	
시험검사 대상 물질				구성원료 금지	제품표시

<sup>1)</sup> 스프레이형 제품에 적용

#### 탈취제

안전기준				사용제한 물질	표시물질
물질명	일반 (mg/kg)	스프레이형 (mg/kg)	미생물 (mg/kg)		
폼알데하이드	25 이하	12 이하	12 이하	PHMG <sup>1)</sup>	아세트알데하 이드
메탄올	2,000 이하	2,000 이하	2,000 이하	PGH <sup>1)</sup>	알루미늄클로 로하이드레이트
산화 에틸렌	4,000 이하	100 이하	-	PHMB <sup>1)</sup>	염화수소 <sup>1)</sup>
나프탈렌	2,000 이하	50 이하	10 이하	염화비닐	이산화규소 <sup>1)</sup>
이산화염소	-	5 이하 (mg/L)	-	붕소산 사나트륨염	산화아연
IPBC	-	8 이하	-	1,4-디클로 로벤젠	DEHP
은	-	0.4 이하	-	MIT <sup>1)</sup>	디클로로브로 모메탄
벤젠	1,000 이하	20 이하	-	CMIT <sup>1)</sup>	-
글리옥살	100 이하	2 이하	-		
트리클로로에틸렌	4 이하	0.1 이하	-		
아세트알데하이드	-	-	40 이하		
니켈	-	-	0.4 이하		
클로로포름	-	-	32 이하		
DDAC	-	실내 공기용 15 이하 의류 섬유신발용 1,800 이하	-		
에틸렌글리콜	-	2,000 이하	-		
시험검사 대상 물질				구성원료 금지	제품표시

<sup>1)</sup> : 스프레이형 제품에 적용



#### IV. 염료 · 염색류

##### 물체 탈 · 염색체

안전기준		사용제한물질	표시물질		
물질명	기준(mg/kg)				
벤젠	30 이하	PHMG <sup>1)</sup>	2-부톡시에탄올		
트리클로로에틸렌	0.1 이하	PGH <sup>1)</sup>	1,4-다이옥세인		
-	-	PHMB <sup>1)</sup>	p-클로로아닐린		
		염화비닐	톨루엔		
		4,4'-메틸렌비스(2-클로로아닐린)	자일렌		
		MIT <sup>1)</sup>	프로필렌 글리콜		
		CMIT <sup>1)</sup>	에틸렌 글리콜		
		-	-	카본 블랙 <sup>1)</sup>	구리, 구리화합물 <sup>1)</sup>
				이산화티탄늄	
시험검사 대상 물질		구성원료 금지	제품표시		

<sup>1)</sup> : 스프레이형 제품에 적용

##### 문신용 염료

안전기준		사용제한물질	표시물질
물질명	기준(mg/kg)		
비소	2 이하	아조염료 등, 총 64종 (고시 참조)	-
바륨	50 이하		
카드뮴	0.2 이하		
코발트	25 이하		
6가크롬(크롬(VI))	0.2 이하		
구리	25 이하		
수은	0.2 이하		
납	2 이하		
셀레늄	2 이하		
안티몬	2 이하		
주석	50 이하		
아연	50 이하		
파라벤류	단일물질 4,000 이하, 혼합물 8,000 이하		
폼알데하이드	20 이하		
나프탈렌	0.5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00 이하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총합으로 0.5 이하(단, 벤조-a-피렌의 함유량은 0.005 이하)		
무균시험	무균이어야 함		
시험검사 대상 물질		구성원료 금지	제품표시

#### IV. 염료 · 염색류(계속)

##### 인쇄용 잉크 · 토너

안전기준			사용제한물질	표시물질	
물질명	기준(mg/kg)				
벤젠	토너	5 이하	카드뮴	-	
	잉크	17 이하			
-	-		납		
			6가크로뮴		
			수은		
			아조염료		
시험검사 대상 물질			구성원료 금지		제품표시

※ **재생용 잉크·토너** 재생용 잉크·토너의 경우 재제조 및 재생업자 또는 원료유통업자가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원료유통업자가 자가검사번호를 취득한 경우 재제조 및 재생산업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다

## V. 살생물제류

### 소독제

안전기준			사용제한물질	표시물질
물질명	일반 (mg/kg)	스프레이형 (mg/kg)		
폼알데하이드	100 이하	40 이하	PHMG <sup>1)</sup>	술기름
아세트알데하이드	90 이하	40 이하	PGH <sup>1)</sup>	시트르산
클로로포름	30 이하	30 이하	PHMB <sup>1)</sup>	-
벤젠	60 이하	60 이하	염화비닐	
-	-	-	디에틸렌 글리콜 모노에테르 MIT <sup>1)</sup> CMIT <sup>1)</sup>	
시험검사 대상 물질			구성원료 금지	제품표시

1) : 스프레이형 제품에 적용

### 소독제 유효성분

구분	국문명	영문명
1	노난 산; 펠라곤 산	Nonanoic acid; pelargonic acid
2	염산	Hydrogen chloride/Hydrochloric acid
3	황산 구리(II)	Copper sulphate pentahydrate
4	에틸렌다이아민테트라아세트산	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 EDTA
5	에틸렌다이아민테트라아세트산, 이나트륨염	Ethylenediaminetetraacetate, disodium; Disodium EDTA
6	에틸렌다이아민테트라아세트산, 삼나트륨염	Ethylenediaminetetraacetate, trisodium; Trisodium EDTA
7	에틸렌다이아민테트라아세트산, 사나트륨염	Ethylenediaminetetraacetate, tetrasodium; Tetrasodium EDTA
8	수산화 칼륨	Potassium hydroxide
9	은이온	Silver, ion
10	식용색소 적색 제40호; FD&C 적 NO. 40	Color index-Food Red 40; Allura Red AC; Disodium,6-hydroxy-5-[(2-methoxy-5-methyl-4-sulphophenyl)azo]-2-na phthalene sulfonic acid
11	하이드록시아세트산	Sodium hydroxyacetate; Sodium glycolate
12	나이트로트라이아세트산 트라이나트륨염	Glycine,N,N-bis(carboxymethyl)-, sodium salt
13	아세트산	Acetic acid
14	알코올, C12-15, 에톡실레이트	Ethoxylated alcohols(C=12-15); Alcohols, C12-15, Ethoxylated
15	염화알킬(C12-C18)벤질다이메틸암모늄 염	Alkyl(c=12-18) benzyl dimethyl ammonium chloride
16	염화알킬(C12-C18)다이메틸에틸벤질암모늄 염	Alkyl(c=12-18) dimethylethylbenzyl ammonium chloride
17	인산	Orthophosphoric acid
18	O-벤질-p-클로로페놀	Ortho-benzyl-para-chlorophenol; 4-chloro-2-(phenylmethyl) phenol
19	자일렌설퍼네이트 나트륨	Dimethylbenzenesulfonic acid sodium salt; Sodium xylenesulfonate
20	수산화나트륨	Sodium hydroxide
21	규산나트륨	Silicic acid, sodium salt; Sodium silicate
22	탄산나트륨	Sodium carbonate
23	에탄올	Ethanol
24	아이소프로필 알코올; 2-프로판올	Propan-2-ol; Isopropyl alcohol
25	디메틸(펜타데실)아민 옥사이드	dimethyl(pentadecyl)amine oxide; Amines, C12-18-alkyldimethyl,N-oxides
26	브로민화소듐	Sodium bromide
27	차아염소산나트륨	Sodium hypochlorite
28	과산화수소	Hydrogen peroxide
29	차아염소산칼슘	Calcium hypochlorite
30	하이포아염소산	Hypochlorous acid
31	클로록실레놀	Chloroxlenol
32	4-클로로-3,5-다이메틸페놀	4-chloro-3,5-dimethylphenol
33	4-아이소프로필-3-메틸페놀	4-isopropyl-3-methylphenol; 4-isopropyl-m-cresol
34	세틸피리디늄 클로라이드 모노하이드레이트	Cetylpyridinium chloride monohydrate
35	2-페녹시에탄올	2-Phenoxyethanol
36	2-에틸 헥사디올	2-ethyl hexanediol
37	알칼리 이온수(pH 11 이상)	Alkaline ionized water, pH ≥ 11
38	이산화 염소	Chlorine dioxide
39	심클로센; 트라이클로로아이소시아누르산	Symclosene; 1,3,5-Trichloro-1,3,5-Triazine- 2,4,6(1H,3H,5H)-Trione

## V. 살생물제류(계속)

### 방충제

안전기준		사용제한물질	표시물질
물질명	스프레이형 및 리필형 (mg/kg)		
포름알데하이드	3 이하	PHMG <sup>1)</sup>	메탄올
아세트알데하이드	3 이하	PGH <sup>1)</sup>	나프탈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4 이하	PHMB <sup>1)</sup>	1,4-다이클로벤젠
-	-	염화비닐	
		MIT <sup>1)</sup>	
		CMIT <sup>1)</sup>	
시험검사 대상 물질		구성원료 금지	제품표시

<sup>1)</sup> : 스프레이형 제품에 적용

### 방충제 유효성분

구분	국문명	영문명
1	펠라곤 산	Nonanoic acid
2	메틸 노닐 케톤	Undecan-2-one; Methyl-nonyl-ketone
3	다이에틸-메타-톨루아마이드	N,N-diethyl-m-toluamide
4	라우르산; 도데칸 산	Lauric acid; Dodecanoic acid
5	시스-9-트리코센	Cis-9-tricosene; Cis-tricos-9-ene
6	테트라데카-9,12-디에닐 아세테이트	(Z,E)-tetradeca-9,12-dienyl acetate
7	카프린산	Decanoic acid
8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	Ethyl butylacetylaminopropionate; 3-[N-n-Butyl-N-acetyl]aminopropionic acid ethyl ester
9	라벤더 오일	Lavender oil
10	클로록실레놀	Chloroxyleneol
11	수소처리된 경질 파라핀 정제유	Distillates(petroleum), hydrotreated light paraffinic
12	수소처리된 중간 정제유	Distillates(petroleum), hydrotreated middle
13	수소처리된 경질 정제유	Distillates(petroleum), hydrotreated light
14	시트로넬라의 기름	Citronella oil
15	정향유	Clove oil; Oils, eugenia caryophyllata
16	파마자 기름	Castor oil
17	스피아민트 오일	Oils, spearmint
18	알릴 아이소싸이오사이안산	Allyl isothiocyanate
19	트랜스플루트린	Transfluthrin; 2,3,5,6-tetrafluorobenzyl trans-2-(2,2-dichlorovinyl)-3,3-dimethylcyclopropanecarboxylate
20	2,6-다이-tert-부틸-p-크레졸	2,6-di-tert-butyl-p-cresol
21	엠펜스린	Empenthrin/1-ethynyl-2-methylpent-2-enyl 2,2-dimethyl-3-(2-methylprop-1-enyl)cyclopropanecarboxylate
22	2,2'-메틸렌비스(6-t-부틸-4-에틸페놀)	2,2'-Methylenebis(4-ethyl-6-tert-butylphenol); 2,2'-Methylenebis[6-(1,1-dimethylethyl)-4-ethylphenol]
23	알파-브로모신알데하이드	α-Bromocinnamaldehyde
24	선형 알킬벤젠	Linear alkylbenzene
25	3-요오드-2-프로필일 부틸 카바민산	3-Iodo-2-propyl butyl carbamate
26	브롬펜빈포스	bromfenvinfos; 2-bromo-1-(2,4-dichlorophenyl)vinyl diethyl phosphate
27	다이프로필렌 글리콜	1,1'-Oxydi-2-propanol
28	히노키티올	hinokitiol/2-hydroxy-4-isopropyl-2,4,6-cycloheptatrien-1-one
29	나프탈렌	Naphthalene
30	1,4-다이클로로벤젠	1,4-Dichlorobenzene
31	장뇌	Camphor/ 1,7,7-Trimethylbicyclo[2.2.1]heptane-2-one
32	시나몬(계피) 오일	Oils. cinnamon
33	겨자씨 오일	Oils. mustard

## V. 살생물제류(계속)

### 방부제

안전기준		사용제한물질	표시물질
물질명	일반(mg/kg)		
에틸벤젠	700 이하	PHMG <sup>1)</sup>	-
(1-메틸에틸)벤젠	700 이하	PGH <sup>1)</sup>	
자일렌( <i>m,p,o</i> -자일렌 포함)	60 이하	PHMB <sup>1)</sup>	
톨루엔	70 이하	염화비닐	
벤젠	10 이하	무수 크롬산	
트리클로로에틸렌	0.03 이하	중크롬산 나트륨	
-	-	나트륨 펜타클로로 페네이트	
-	-	트리부틸주석산화합물	
시험검사 대상 물질		MIT <sup>1)</sup>	
		CMIT <sup>1)</sup>	
시험검사 대상 물질		구성원료 금지	제품표시

<sup>1)</sup> : 스프레이형 제품에 적용

### 방부제 유효성분

구분	국문명	영문명
1	붕산, 보린산	Boric acid
2	산화 제2구리	Cupric oxide
3	테부코나졸	Tebuconazole
4	붕산 나트륨	Disodium tetraborate
5	톨릴플루아니드	Tolylfluanid
6	디클로플루아니드	Dichlofluanid
7	염화 알킬(C12-C16)벤질다이메틸암모늄	Quaternary ammonium compounds, benzyl-C12-16-alkyldimethyl, chlorides
8	삼산화 이붕소	Diboron trioxide
9	3-요오드-2-프로핀일 뷰틸 카바민산	3-iodo-2-propynylbutylcarbamate
10	제타 사이퍼메트린	Zeta Cypermethrin
11	프로피코나졸	Propiconazole
12	1-뷰톡시-2-프로판올	1-Butoxy-2-propanol
13	수소처리된 중질 나프타	Naphtha (petroleum), hydrotreated heavy
14	수소탈황화된 중질 나프타	Naphtha (petroleum), hydrodesulfurized heavy
15	D-글루코피라노스, 올리고, 데실 옥틸 글루코사이드	D-Glucose, decyl octyl ethers, oligomeric

## V. 살생물제류(계속)

### 살조제

물질명	안전기준		사용제한물질	표시물질
	일반(mg/kg)	스프레이형(mg/kg)		
MEKP	600 이하	600 이하	PHMG <sup>1)</sup>	2-부톡시 에탄올 아세트 알데하이드
클로로포름	300 이하	100 이하	PGH <sup>1)</sup>	
이산화염소	-	1,000 이하	PHMB <sup>1)</sup>	폼알데하이드
과아세트산	-	3,000 이하	MIT <sup>1)</sup>	
	-	-	CMIT <sup>1)</sup>	-
시험검사 대상 물질			구성원료 금지	제품표시

<sup>1)</sup> : 스프레이형 제품에 적용

### 살조제 유효성분

구분	국문명	영문명	비고
1	2-클로로아세트산 혼합 1,3프로판디아민N-(C=10-16) 알킬 유도체 반응물	Amines, N-C12-C14 (even-numbered)-alkyl- trimethylenedi-, reaction products with chloroacetic acid (Ampholyt 20)	139734-65-9
2	벤질알킬(C=12-16)디메틸암모늄	Benzyl-C12-16-alkyldimethyl, chlorides	68424-85-1
3	벤질알킬(C=12-18)디메틸암모늄	Benzyl-C12-18-alkyldimethyl, chlorides	68391-01-5
4	벤질-디메틸-테트라데실암모늄	Benzyl-dimethyl-tetradecylazanium;1,1-dioxo-1,2-benzothiazol-3-olate	68989-01-5
5	염화암모늄(C12-14) 알킬디메틸에틸벤질	C12-14-Alkyldimethyl(ethylbenzyl) ammonium chlorides	85409-23-0
6	수산화칼슘	Calcium hydroxide	1305-62-0
7	차아염소산 칼슘	Calcium hypochlorite	7778-54-3
8	칼슘 마그네슘 산화물	Calcium magnesium oxide	37247-91-9
9	칼슘 마그네슘 수산화물	Calcium magnesium tetrahydroxide	39445-23-3
10	이산화염소	Chlorine peroxide	10049-04-4
11	구리	Copper	7440-50-8
12	황산 구리(II), 오수화물	Copper(II) sulfate pentahydrate	7758-99-8
13	4차 암모늄 화합물, 디-C8-10-알킬다이메틸	Dicapryl/dicaprylyl dimonium chloride	68424-95-3
14	글루코프로타민	Glucoprotamin	164907-72-6
15	과산화수소	Hydrogen peroxide	7722-84-1
16	마그네슘 모노퍼옥시프탈레이트 6수화물	Magnesium monoperoxyphthalate hexahydrate	84665-66-7
17	5-메틸옥사졸리딘	3,3'-Methylenebis(5-methylloxazolidine)	66204-44-2
18	옥탄퍼옥소산	Octaneperoxoic acid	33734-57-5
19	에틸렌 글리콜 페닐 에테르	2-Phenoxyethanol	122-99-6
20	폴리(2-하이드록시프로필디메틸암모늄 염화물)	Poly(2-hydroxy propyl dimethyl ammonium chloride)	25988-97-0
21	은 구리 제올라이트	Silver copper zeolite	130328-19-7
22	은 인산염 유리	Silver phosphate glass	308069-39-8
23	은 아연 제올라이트	Silver zinc zeolite	130328-20-0
24	제올라이트	Zeolites	1318-02-1
25	차염소산나트륨	NaOCl	7681-52-9

## 용기 · 포장 및 중량에 관한 기준

구분	내 용
결모양	<p>가. 이물질의 혼입 및 기타 오염이 없어야 한다.</p> <p>나. 외관은 깨끗하여야 하며 날카로운 부위 등 위험부위가 없어야 한다.</p> <p>다. 구조는 안전상 결점이 없어야 하고, 내용물이 새지 않아야 한다.</p> <p>라. 에어로졸 제품의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적합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분사 후 흐름현상이 없어야 한다.</p> <p>마. 접착제는 용기로부터 용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p>
용기강도 및 누수(액체형 제품에 한함)	<p>가. 용기 강도 및 누수시험은 액체형, 에어로졸형 등 제품의 내용물이 액체인 제품에 한한다. 다만 해당 제품의 용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회용 포장 용기</li> <li>2) 개봉 후 재잠금이 불가능한 리필용 용기</li> <li>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용기</li> <li>4) 방향제 및 탈취제에 사용되는 장식 기능이 있는 유리용기를 포함한 깨질 가능성이 있는 용기 (강도시험만 제외한다)</li> <li>5) 다른 재질의 용기에 담았을 때 제품 내용물이 용기와 반응하거나 변질될 우려 등의 사유로 사용한 유리용기(강도시험만 제외한다)</li> </ol> <p>나. 강도 및 누수 시험을 했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p> <p>다. 강도 및 누수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강도시험                     <p>호칭 및 내용량의 내용액으로 채워진 위해우려제품을 보통 사용하는 상태로 한 후 마개를 닫고 다음의 높이에서 콘크리트면상으로 측면 밑바닥을 충격점이 되도록 1회씩 낙하시켰을 때 파손 또는 현저하게 새어나오지 않아야 한다.</p> <p><b>가) 제품의 중량이 2kg 미만인 경우 : 120 cm</b></p> <p><b>나) 제품의 중량이 2kg 이상 6kg 미만인 경우 : 80 cm</b></p> <p><b>다) 제품의 중량이 6kg 이상인 경우 : 60 cm</b></p> </li> <li>2) 누수시험                     <p>호칭 및 내용량의 내용액으로 채워진 위해우려제품을 보통 사용하는 상태로 한 후 마개를 닫고 거꾸로 세워서 24시간 방치했을 때 액이 새어 나오지 않아야 한다.</p> </li> </ol> <p>라. 가목 4)호 또는 5)호에 따라 강도시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리용기를 사용한 제품의 경우, 다음의 사항을 제품의 표시사항에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낙하 또는 취급 부주의로 인한 파손에 관한 주의 또는 경고 문구</li> <li>2) 낙하 또는 취급 부주의로 인한 파손으로 내용물이 누출된 경우 조치사항</li> </ol>
중량 또는 용량	<p>가. 중량 또는 용량 시험을 했을 때 표시치의 허용오차 및 표시방법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p> <p>나. 중량 또는 용량 시험방법은 「정량표시상품의 정량 검사기준」에 따른다.</p>

## 어린이보호대상 대상 위해우려제품

품목	해당	제외
세정제	가. 액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 1) 수산화나트륨·수산화칼륨 <sup>(주1)</sup> 또는 하이포(차아)염소산염 2%(w/w) 이상 2) 황산 10%(w/w) 이상 3) 터펜유 10%(w/w) 이상 4) 석유정제물 <sup>(주2)</sup> 10%(w/w) 이상 5) 메틸알코올 4%(w/w) 이상 6) 탄화수소 또는 탄화수소 혼합물 10%(w/w) 이상 나. 분말·알갱이 또는 플레이크 등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 2%(w/w) 이상의 것	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것은 제외한다. 1) 에멀션 형태의 것 2) 압축가스로 충전된 분무용기의 것 3) 별도로 어린이 보호기구가 부착되어 있는 펌프 또는 방아쇠로 작동되는 분무용기의 것(용기 캡, 노즐부분 해당) 4) 동점도 19.8~24.2 cSt(40°C) [Saybolt 점도 105(100°F)] 이상의 것 5) 보충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1회용 포장 6) 실량 15kg 이상의 대용량의 것 7) 변기세정제 중 포장 개봉 후 변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
코팅제	가. 액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 1) 터펜유 10%(w/w) 이상 2) 석유정제물 10%(w/w) <sup>(주2)</sup> 이상 3) 탄화수소 및 탄화수소 혼합물 10%(w/w) 이상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것은 제외한다. 1) 에멀전 형태의 것 2) 압축가스로 충전된 분무용기의 것 3) 별도로 어린이 보호기구가 부착되어 있는 펌프 또는 방아쇠로 작동되는 분무용기의 것(용기 캡, 노즐부분 해당) 4) 동점도 19.8~24.2 cSt(40°C) [Saybolt 점도 105(100°F)] 이상의 것
접착제	가. 액상으로 되어 있는 순간접착제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 1) 메타크릴산 5%(w/w) 이상 2) 시아노아크릴레이트 10%(w/w) 이상	-
방향제	가. 1액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 1) 알코올 10% <sup>(주3)</sup> (w/w) 이상 2) 탄화수소 또는 탄화수소 혼합물 <sup>(주4)</sup> 10%(w/w) 이상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것은 제외한다. 1) 에멀션 형태의 것 2) 압축가스로 충전된 분무용기의 것 3) 분무 또는 향기발산을 위한 거치기구에 별도로 삽입하여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것(용기 캡, 노즐부분 해당) 4) 별도로 어린이 보호기구가 부착되어 있는 펌프 또는 방아쇠로 작동되는 분무용기의 것 5) 동점도 19.8~24.2 cSt(40°C) [Saybolt 점도 105(100°F)] 이상의 것
<p><b>주1. 수산화나트륨·수산화칼륨</b>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은 유리되어 있거나 화학적으로 중성화되지 않은 것에 한한다.</p> <p><b>주2. 석유정제물</b> 석유정제물이라 함은 석유에서 정제한 탄화수소 혼합물(예 : 벤젠, 가솔린, 나프타, 미네랄 실 오일, 케로신, 연료 오일, 윤활오일, 석유 젤리, 파라핀 왁스, 아스팔트 등)을 말한다. 다만, 화장품법 등 타법의 규정에 따라 사용이 허가된 물질(미네랄 실 오일, 석유 젤리 등)은 정제 과정의 완전성과 발암물질이 함유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제외한다.</p> <p><b>주3. 알코올</b> 알코올이라 함은 탄소수 3 이상 13 이하인 일차 알코올을 말한다.</p> <p><b>주4. 탄화수소 또는 탄화수소 혼합물</b> 탄화수소 혼합물이라 함은 탄소 및 수소로만 구성되어 있는 인체에 유해한 혼합물(예 : 벤젠, 톨루엔, 자일렌, 펜탄, 이소펜탄, N-부탄, 헵탄, 1-부텐, 이소부탄, N-헥산, 2-메틸펜탄, 3-메틸펜탄, 시클로헥산, 프로판, 시스-2-부텐, 트랜스-2-부텐, 1-펜텐, 네오헥산, 2,3-디메틸부탄 등)을 말한다.</p>		



# 위해우려제품 표시사항

□ 위해우려제품 표시사항 : 품목별 공통사항 + 품목별 개별사항

□ 품목별 공통사항

구분	내용	
표시사항	<p>가. 위해우려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품의 1차 포장 또는 최소단위 포장의 보기 쉬운 곳에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유해성분 중 유해·위험문구, 사용상 주의사항 및 사용방법은 제품의 2차 포장(첨부분서 등을 포함한다)에 별도 표시할 수 있다. 다음 사항 외의 정보에 대한 표시가 필요한 경우, 부가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품목<sup>(주1)</sup></li> <li>2) 종류(별표 2에 따른 모델의 구분)</li> <li>3) 모델명<sup>(주2)</sup></li> <li>4) 생산년월<sup>(주3)</sup></li> <li>5) 생산국명, 생산회사명</li> <li>6) 생산회사 주소 및 전화번호(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에 한함)</li> <li>7) 수입회사명(수입품에 한함)</li> <li>8) 수입회사 주소 및 전화번호(수입품에 한함)</li> <li>9) 성분(기능)<sup>(주4)</sup></li> <li>10) 중량 또는 용량<sup>(주5)</sup> ※ 인쇄용 잉크·토너의 경우 10)을 인쇄가능매수로 표시</li> <li>11) 액성<sup>(주6)</sup>(세정제, 합성세제, 섬유유연제에 한함)</li> <li>12) 표준사용량(표백제, 합성세제, 섬유유연제는 반드시 표시. 기타품목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li> <li>13) 사용상 주의사항<sup>(주7)</sup></li> </ol>
	<p>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포장면적이 70cm<sup>2</sup> 미만인 제품의 경우, 다음 사항을 제외한 표시사항을 제품의 2차 포장(첨부분서 등을 포함한다)에 별도 표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품목<sup>(주1)</sup></li> <li>2) 종류(별표 2에 따른 모델의 구분)</li> <li>3) 모델명(제품의 호칭)<sup>(주2)</sup></li> <li>4) 생산년월<sup>(주3)</sup></li> <li>5) 생산회사명</li> <li>6) 생산회사 전화번호(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에 한함)</li> <li>7) 수입회사명 및 전화번호(수입품에 한함)</li> <li>8) 중량 또는 용량<sup>(주5)</sup></li> </ol>
	<p>다. 살균·항균·소독·방부 등의 기능을 가진 살생물 성분을 함유한 위해우려제품의 경우, 사람 또는 동식물 및 환경에 대한 제품의 위해성과 효과에 대해 오해가 있는 문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저위해성', '무독성', '무해한', '자연친화적인',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제품에 표시할 수 없다.</p>	
	<p><b>주1. 품목</b> 별표 1에 따른 세제류, 코팅·접착제류, 방향제류, 염료·염색류에 속하는 품목은 "일반 생활화학제품(품목명)"으로 표기하고, 살생물제류에 속하는 품목은 "살생물제품(품목명)"으로 표기한다. 다만, 포장면적이 70 cm<sup>2</sup> 미만인 경우에는 품목명만을 표기할 수 있다. (예) 일반 생활화학제품(세정제), 살생물제품(소독제) 등</p> <p><b>주2. 모델명</b> 용도제형색상 등 서로 다른 제품을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을 말한다.</p> <p><b>주3. 생산년월</b> 필요 시 유통기한, 출고년월 또는 LOT 번호 등을 함께 표기할 수 있다.</p> <p><b>주4. 성분의 표시</b> (1) 성분을 표시할 때는 성분명 또는 성분의 기능(첨가이유*)형태로 표시하며, 함량을 부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 첨가사유를 표시 (예) 산도조절제, 미생물억제제, 착향제 등</p> <p>(2) 계면활성제에 대하여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계면활성제의 계열을 표시하고, 총 함량에 대해 중량 백분율로 표시한다.</p>	

<표> 계면활성제 계열

구분	계열
음이온계 계면활성제	-지방산계(음이온) -직쇄 알킬 벤젠계 -고급 알코올계(음이온) -알파 올레핀계 -노말 파라핀계
비이온계 계면활성제	-지방산계(비이온) -고급 알코올계(비이온) -알킬 페놀계
양쪽성 이온계 계면활성제	-아미노산계 -베타인계 -아민 옥사이드계
양이온계 계면활성제	-제4급 암모늄염계

<그림> 계면활성제 표시 예시

<계면활성제 표시>  
 지방산계(음이온), 직쇄 알킬벤젠계(음이온),  
 알파올레핀계, 아미노산계, 베타인계,  
 아민 옥사이드계, 고급 알코올계(비이온) 등  
 <계면활성제 총 함량>  
 - 5% 미만  
 - 5% 이상 ~ 15% 미만  
 - 15% 이상 ~ 30% 미만  
 - 30% 이상

- (3) **인산염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사용량을 표시한다. 인산염에 대하여는 인산염의 용어를 이용하여 표시하고 괄호쓰기로 오산화인( $P_2O_5$ )으로서의 함량을 표시한다.
- (4) **제품에 사용된 성분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또는 제25조, 제27조에 의하여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로 지정된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특히 눈에 띄는 붉은 글씨로 제품의 겉면에 성분의 명칭(화학물질명), 성분의 기능, 함유량, 그림문구, “독성있음” 등을 표시한다. 다만, 그림문구는 생략할 수 있으나 발암성, 생식독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로 분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제품의 성분명이 (4)에 따른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에 해당하나 그 함량이 환경부 고시「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에 따른 혼합물의 지정기준 또는「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혼합물의 분류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성분의 명칭과 기능, 함유량을 표기한다.
- (6) 성분의 명칭(화학물질명)을 표기할 때 향료에 해당하는 성분의 명칭은 생략할 수 있으나, 산도조절제로 사용되는 성분은 중화반응에 따른 생성물로 대신 기재할 수 있다. 다만, 향료의 구성 성분 중 알려지 유발물질로 알려진 아래 표의 성분 26종을 세제류(세정제·합성세제·표백제·섬유유연제) 제품에 0.01% 이상 쓰는 경우에는 해당 성분의 명칭(화학물질명)과 기능을 표시한다.

- |   |                                  |
|---|----------------------------------|
| 1. 아밀신남알 (CAS No 122-40-7)                      | 2. 벤질알코올 (CAS No 100-51-6)       |
| 3. 신나밀알코올 (CAS No 104-54-1)                     | 4. 시트랄 (CAS No 5392-40-5)        |
| 5. 유제놀 (CAS No 97-53-0)                         | 6.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CAS No 107-75-5)  |
| 7. 이소유제놀 (CAS No 97-54-1)                       | 8. 아밀신나밀알코올 (CAS No 101-85-9)    |
| 9. 벤질살리실레이트 (CAS No 118-58-1)                   | 10. 신남알 (CAS No 104-55-2)        |
| 11. 쿠마린 (CAS No 91-64-5)                        | 12. 제라니올 (CAS No 106-24-1)       |
| 13. 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살데하이드(CAS No 31906-04-4) | 15. 벤질신나메이트 (CAS No 103-41-3)    |
| 14. 아니스에탄올 (CAS No 105-13-5)                    | 17.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CAS No 80-54-6) |
| 16. 파네솔 (CAS No 4602-84-0)                      | 19. 벤질벤조에이트 (CAS No 120-51-4)    |
| 18. 리날롤 (CAS No 78-70-6)                        | 21. 헥실신남알 (CAS No 101-86-0)      |
| 20. 시트로넬롤 (CAS No 106-22-9)                     | 23. 메칠2-옥티노에이트 (CAS No 111-12-6) |
| 22. 리모넨 (CAS No 5989-27-5)                      | 25. 참나무이끼추출물 (CAS No 90028-68-5) |
| 24. 알파-이소메칠이오논 (CAS No 127-51-5)                |                                  |
| 26. 나무이끼추출물 (CAS No 90028-67-4)                 |                                  |

- (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해당물질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라 발암성, 생식독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함유량에 관계없이 (4)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발암성, 생식독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분류기준 중 혼합물의 분류기준 이하로 함유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8) **톨루엔, 자일렌, 석유정제물을 1% 이상 함유한 제품**은 제품의 전면부에 화학물질 명칭, 기능, 함유량, “독성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석유정제물이라 함은 석유에서 정제한 탄화수소 혼합물(예 : 벤젠, 가솔린, 나프타, 미네랄 실 오일, 케로신, 연료 오일, 윤활오일, 석유 젤리, 파라핀 왁스, 아스팔트 등)을 말한다. 단, 화장품법 등 타법의 규정에 따라 사용이 허가된 물질(미네랄 실 오일, 석유 젤리 등)은 정제 과정의 완전성과 발암물질이 함유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와, 향초 등의 원료로 쓰이는 고체 파라핀 왁스 및 스프레이형 제품의 추진체로 쓰이는 액화석유가스 등은 제외한다.
- (9) 제품에 사용된 성분이 살균·항균·소독·방부·보존 등의 기능을 가진 경우에는 함유량에 관계없이 제품의 겉면에 “살생물질(화학물질명, 독성있음) 첨가”로 표시하거나 또는 성분의 명칭(화학물질명), 성분의 기능, 함유량을 표시한다.

**주5. 중량용량**

포장단위별 중량·용량표시 및 표시치의 허용범위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법정계량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

**주6. 액성**

수소이온농도(pH)에 따른 액성을 아래표를 참고하여 표시한다(다만, 액성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 해당되는 모든 액성을 표기하되, 수소이온농도의 범위값을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수소이온농도의 측정은 액성의 경우 원액을 사용하고, 분말의 경우에는 1L의 물에 50g의 시료를 KS M 0011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수용성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은 ‘유성’ 등의 표시로 대신할 수 있다.

<표> 수소이온농도에 따른 액성표시 문자

수소이온 농도(pH)	액성
11.0을 초과하는 것	알칼리성
8.0 초과 ~ 11.0 이하	약알칼리성
6.0 이상 ~ 8.0 이하	중성
3.0 이상 ~ 6.0 미만	약산성
3.0 미만	산성

**주7. 사용상 주의사항**

- (1)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밑줄을 긋고 활자를 두껍게 하거나 문자 또는 표시의 색을 변경하는 등 다른 표시사항보다 눈에 띄는 방법을 사용하여 표시한다.
- ①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 ② 응급 처치사항
  - ③ 특별히 주의하여야 할 사항
- (2) 다음의 사용상 주의사항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하거나 다른 적절한 용어로 변경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상세정보 또는 추가사항을 표시할 수 있다.
- ①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마시오.
  - ② 직사광선이나 열기에 노출시키지 마시오.(단, 가연성 가스를 사용하는 에어로졸 제품의 경우 직사광선이나 열기에 노출시 폭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12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눈에 띄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크기가 작아 표시가 불가능하거나 제품의 외형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글자크기를 줄일 수 있다.)
  - ③ 사람이나 음식물에 직접 분사하지 마시오.
  - ④ 용기와 결합된 뚜껑을 역지로 벗기지 마시오.
  - ⑤ 제품이 얼었을 경우 변질 우려가 있으니 상온에서 사용하시오.
  - ⑥ 내용물이 눈이나 피부에 닿으면 깨끗한 물로 씻고 이상이 있을 경우 의사와 상의하시오.
  - ⑦ 넘어진 채로 방지되면 액이 흘러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오.
  - ⑧ 눈보다 높은 곳에서 사용하면 분사액이 눈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스펀지나 천에 묻혀 사용하시오.
  - ⑨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시 충분히 환기를 하시오.
  - ⑩ 변색, 탈색 등의 우려가 있는 곳에 사용시 눈에 띄지 않는 부위에 사전 변색, 탈색 등의 유무를 확인한 후 사용하시오.

	<p>㉠ 사용 후 잔량은 잘못 사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원래의 용기에 보관하시오.</p> <p>㉡ 내용물을 먹거나 삼킨 경우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의사와 상의하시오.</p> <p>(3) 제품에 사용된 성분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또는 제25조, 제27조에 의하여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지정된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예방조치문구를 확인하여 표시하여야 한다.</p>
<p><b>자가검사 표시</b></p>	<p>가. 위해우려제품을 생산·수입하려는 자는 이 고시에 따른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자가검사 도안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에 적합함” 문구와 자가검사 번호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글자 및 도안의 형태와 크기는 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p> <p>나. 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제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하거나 새기는 방법 등으로 하여야 한다.</p> <p>다. “자가검사번호는 이 제품이 품목<sup>(주1)</sup> 안전기준에 적합하였음을 의미하며, 타 용도와는 무관합니다.” 라는 문구를 12 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눈에 띄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크기가 작아 표시가 불가능하거나 제품의 외형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글자 크기를 줄일 수 있다.</p> <div style="text-align: center;"> <p><b>&lt;그림&gt; 자가검사 표시 예시</b></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10px auto;"> <p>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에 적합함 자가검사번호 :</p> </div> <p>자가검사번호는 이 제품이 품목<sup>(주1)</sup> 안전기준에 적합하였음을 의미하며, 타 용도와는 무관합니다.</p> </div>
<p><b>어린이보호 포장 표시</b></p>	<p>가.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위해우려제품의 생산업자,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위해우려제품에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어린이보호포장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p> <p>나. 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하거나 새기는 방법 등으로 하여야 한다</p>
<p><b>표시방법</b></p>	<p>가. 일반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표시는 한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자나 외국어를 함께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자나 외국어는 한글표시의 활자보다 크게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입되는 제품과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는 외국어를 한글표시의 활자보다 크게 표시할 수 있다.</li> <li>2)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생산년월 등 일부표시사항의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인 또는 압인 등을 사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i> <li>3) 표시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로 인쇄하거나 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포장의 특성상 인쇄, 각인 또는 소인 등으로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표시사항이 인쇄 또는 기재된 라벨(Label) 등을 사용할 수 있다.</li> <li>4) 용기나 포장은 다른 생산업자의 표시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li> <li>5) 표시사항이 인쇄 또는 기재된 라벨을 사용한 경우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한다.</li> <li>6)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제품명, 생산년월 등 표시사항에 대하여 알기 쉬운 장소에 점자표기를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티커를 이용하여 점자표시를 할 수 있다.</li> </ol> <p>나. 표시장소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곳에 하여야 한다.</p> <p>다. 활자크기 표시사항의 표시활자는 8 포인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포장면적이 400 ㎠ 미만인 제품의 경우 6 포인트 이상의 표시활자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p>

□ 품목별 개별표시사항

품목	표시사항
세정제	<p>다음의 물질을 제품 내에 함유하는 경우에는 함유량에 관계없이 제품의 겉면에 성분의 명칭(화학물질명), 기능, 함유량, "독성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이나 톨루엔을 함유하는 경우에는 그림문자를 추가로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가습기용 세정제의 경우 "가습용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지 마시오." 문구를 추가로 표시</p> <p>※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이소프로필벤젠, 2-부톡시에탄올(부틸 셀로솔브), 톨루엔, 3-요오드-2-프로핀일 뷰틸 카바민산</p>
합성세제	<p>다음의 물질을 제품 내에 함유하는 경우에는 함유량에 관계없이 제품의 겉면에 성분의 명칭(화학물질명), 기능, 함유량, "독성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톨루엔을 함유하는 경우에는 그림문자를 추가로 표시하여야 하며, 캡슐형 제품의 경우에는 다음의 문구를 추가로 표시</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auto; width: fit-content;"> <p style="text-align: center;">&lt;캡슐형 세제를 삼켰을 경우 응급처치사항&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제를 입에 넣었을 경우, 입과 얼굴을 물로 헹구시오.</li> <li>○ 삼켰을 경우 억지로 토하게 하지 말고, 즉시 의사에게 연락하거나 병원 응급실로 가시오.</li> <li>○ 눈이나 손 부근에 세제가 묻었을 경우, 충분한 양의 물로 꼼꼼히 헹구시오.</li> </ul> </div> <p>※ 톨루엔, 수소화된 경질 파라핀 정제유(석유), 2-부톡시에탄올(부틸 셀로솔브)</p>
표백제	<p>다음의 물질을 제품 내에 함유하는 경우에는 함유량에 관계없이 제품의 겉면에 성분의 명칭(화학물질명), 기능, 함유량, "독성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톨루엔을 함유하는 경우에는 그림문자를 추가로 표시하여야 한다.</p> <p>※ 톨루엔, 수소처리된 경질 정제유(석유), 2-부톡시에탄올(부틸 셀로솔브)</p>
섬유유연제	<p>다음의 물질을 제품 내에 함유하는 경우에는 함유량에 관계없이 제품의 겉면에 성분의 명칭(화학물질명), 기능, 함유량, "독성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톨루엔을 함유하는 경우에는 그림문자를 추가로 표시하여야 한다.</p> <p>※ 톨루엔, 수소처리된 경질 정제유(석유), 2-부톡시에탄올(부틸 셀로솔브), 1,4-다이옥세인</p>
코팅제	<p>제품의 내용물에 액체를 함유하고 있는 경우(스프레이형 및 그 리필용 제품은 제외한다)에는 "분무기 등에 담아 분사하지 마시오" 문구를 추가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p>
방청제	-
김서림 방지제	<p>다음의 물질을 제품 내에 함유하는 경우에는 함유량에 관계없이 제품의 겉면에 성분의 명칭(화학물질명), 기능, 함유량, "독성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p> <p>※ 에틸벤젠, P-자일렌</p>
접착제	<p>다음의 물질을 제품 내에 함유하는 경우에는 함유량에 관계없이 제품의 겉면에 성분의 명칭(화학물질명), 기능, 함유량, "독성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화 프로필렌을 함유하는 경우에는 그림문자를 추가로 표시하여야 하며, 톨루엔, 초산에틸, 메틸알코올을 함유한 경우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문구를 추가로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물체 접착용 제품의 내용물에 액체를 함유하고 있는 경우(스프레이형 및 그 리필용 제품은 제외한다)에는 "분무기 등에 담아 분사하지 마시오" 문구를 추가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p> <p>※ 산화 프로필렌, 아세트산 비닐, 나프탈렌, 이산화 티타늄, 사이클로헥세인, 트리부틸주석산화물, 황화 아연</p>
다림질 보조제	<p>다음의 물질을 제품 내에 함유하는 경우에는 함유량에 관계없이 제품의 겉면에 성분의 명칭(화학물질명), 기능, 함유량, "독성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p> <p>※ 아세톤</p>
방향제	<p>다음의 물질을 제품 내에 함유하는 경우에는 함유량에 관계없이 제품의 겉면에 성분의 명칭(화학물질명), 기능, 함유량, "독성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내용물에 액체를 함유하고 있는 경우(스프레이형 및 그 리필용 제품은 제외한다)에는 "분무기 등에 담아 분사하지 마시오" 문구를 추가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p> <p>※ 이산화티타늄, 3-요오드-2-프로핀일 뷰틸 카바민산, 염화수소(스프레이제품)</p>
탈취제	<p>다음의 물질을 제품 내에 함유하는 경우에는 함유량에 관계없이 제품의 겉면에 성분의 명칭(화학물질명), 기능, 함유량, "독성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를 함유하는 경우에는 그림문자를 추가로 표시하여야 하며, 제품의 내용물에 액체를 함유하고 있는 경우(스프레이형 및 그 리필용 제품은 제외한다)에는 "분무기 등에 담아 분사하지 마시오" 문구를 추가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이 함유되어 있는 의류·섬유·신발용 제품의 경우에는 "다량 흡입시 위해가 우려되니 사람이나 동물, 공기 중에 분사하지 마시오." 문구를 추가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특히, 차량용 제품(LP가스과 에탄올을 함유한 스프레이형 제품에 한함)은 사용상 주의사항을 표시할 때에 "차량의 엔진이 충분히 냉각되고 스파크가 발생되는지 확인하고 일정량을 분사한 후 가스가 흩어지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다시 사용하십시오." 문구를 제품의 1차 포장의 보기 쉬운 곳에 밑줄을 긋고 활자를 두껍게 하거나 문자 또는 표시의 색을 변경하는 등 눈에 띄는 방법을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p>

	<p>※ 아세트알데하이드, 알루미늄클로로하이드레이트, 염화수소(스프레이제품), 이산화규소(스프레이제품), 산화아연, 비스(2-에틸헥실) 프탈레이트, 디클로로브로모메탄</p>
물제탈·염색제	<p>다음의 물질을 제품 내에 함유하는 경우에는 함유량에 관계없이 제품의 겉면에 성분의 명칭(화학물질명), 기능, 함유량, "독성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톨루엔을 함유하는 경우에는 그림문자를 추가로 표시하여야 한다.</p> <p>※ 2-부톡시에탄올(부틸 셀로솔브), 1,4-다이옥세인, P-클로로아닐린, 톨루엔, 자일렌, 프로필렌 글리콜, 에틸렌 글리콜, 카본 블랙(스프레이제품), 구리, 구리화합물(스프레이제품), 이산화티탄늄</p>
문신용 염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표5에 따른 표시사항 중 성분을 표시함에 있어 문신용 염료 생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기재한다. 다만 다음의 성분은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li> <li>· 생산과정 중에 제거되어 최종 제품에는 남아 있지 않은 성분</li> <li>· 안정화제, 보존제 등 원료 자체에 들어 있는 부수 성분으로서 그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양보다 적은 양이 들어 있는 성분</li> </ul> </li> <li>• 성분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자의 크기는 5포인트 이상으로 한다.</li> <li>· 문신용 염료 생산에 사용된 함량이 많은 것부터 기재·표시한다. 다만, 1퍼센트 이하로 사용된 성분은 순서에 상관 없이 기재·표시할 수 있다.</li> <li>· 혼합원료는 혼합된 개별 성분의 명칭을 기재·표시한다.</li> <li>· pH 조절 목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은 그 성분을 표시하는 대신 중화반응에 따른 생성물로 기재·표시할 수 있다.</li> <li>· 해당 성분을 기재·표시할 경우 생산·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lt;기타 성분&gt;으로 기재·표시할 수 있다.</li> </ul> </li> </ul>
인쇄용 잉크·토너	-
소독제	<p>다음의 물질을 제품 내에 함유하는 경우에는 함유량에 관계없이 제품의 겉면에 성분의 명칭(화학물질명), 기능, 함유량, "독성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내용물에 액체를 함유하고 있는 경우(스프레이형 및 그 리필용 제품은 제외한다)에는 "분무기 등에 담아 분사하지 마시오" 문구를 추가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p> <p>※ 솔기름(pine oil), 시트르산</p>
방충제	<p>다음의 물질을 제품 내에 함유하는 경우에는 함유량에 관계없이 제품의 겉면에 성분의 명칭(화학물질명), 기능, 함유량, "독성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내용물에 액체를 함유하고 있는 경우(스프레이형 및 그 리필용 제품은 제외한다)에는 "분무기 등에 담아 분사하지 마시오" 문구를 추가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나프탈렌이나 1,4-다이클로로벤젠을 함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문구를 추가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서 용기에 넣어서 제품을 사용하십시오.</li> <li>(2)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 시에는 대상물과 함께 밀폐된 용기에 넣어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환기하여야 합니다.</li> <li>(3) 포장지에 기재되어 있는 사용량을 지켜서 사용하십시오.</li> <li>(4) 나프탈렌, 1,4-다이클로로벤젠, 장뇌를 혼합하여 사용하지 마시오.</li> <li>(5) 야외에서 사용하지 마시오.(1,4-다이클로로벤젠의 경우에만 한한다)</li> <li>(6) 사용 후 남은 잔량은 어린이 또는 애완동물이 접근할 수 없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십시오.</li> <li>(7) 사용 후 남은 잔량은 플라스틱을 손상시킬 수 있으니,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용기에 밀폐하여 보관하십시오.(1,4-다이클로로벤젠의 경우에만 한한다)</li> <li>(8) 본 제품은 먹을 수 없으며, 먹었을 경우 의사에게 상담을 받으시오.</li> <li>(9) 사용 후에는 지역의 쓰레기배출 규칙에 따라 폐기하십시오.</li> </ol> <p>※ 메탄올, 나프탈렌, 1,4-다이클로로벤젠</p>
방부제	-
살조제	<p>다음의 물질을 제품 내에 함유하는 경우에는 함유량에 관계없이 제품의 겉면에 성분의 명칭(화학물질명), 기능, 함유량, "독성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폼알데하이드를 함유하는 경우에는 그림문자를 추가로 표시하여야 한다.</p> <p>※ 2-부톡시에탄올, 아세트알데하이드, 폼알데하이드</p>